

## 자원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처리



당사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소각대상 폐기물 중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류가 약 10~20% 정도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각으로 인한 2차 오염 감소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훌륭한 재활용 자원인 합성수지를 선별해내어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 조치된 합성수지를 재활용 신고업체에 납품코자 할 경우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을 득한 자가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를 파쇄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을 별도 득하여야 합니다.

##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



질의1) 기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갑"법인)의 폐기물처리시설 등 자산을 매매로 양수한자("갑"법인과는 별도의 신설 "을"법인)가 폐기물관리법 제32조(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갑"법인의 폐기물처리허가증을 첨부하여 승계 신고하는 경우에 "갑"법인의 과거행정처분이 승계되어 "을"법인이 가중벌 되는지?

질의2) 폐기물관리법 별표16 행정처분기준중에서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당해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라함은 그 기준일이 행정처분일, 위반행위일, 위반사실확인서 작성일 등인지?



질의1) 폐기물처리사업을 권리·의무 승계를 받은 자는 권리·의무승계 전의 행정처분관련 사항을 승계 받게 되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기준일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 악취시료 채취 지점



지정악취물질이 포함된 복합악취발생시설 일 경우 시료채취지점은 어디가 적합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비고란 4. 복합악취시료 채취기준에 준하여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선에서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또는

질의2) 복합악취일 경우라도 지정악취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배출구가 아닌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정악취물질은 최소감지능도가 낮아 공기희석관능법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배출농도를 ppm수준이하로 배출토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방지시설 효율과 대기배출허용기준설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배출구가 아닌 부지경계선에서 악취발생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의 비고 5의 규정에 따라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합니다.

##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해양투기 기준과 관련하여



2008년도부터 해양투기 기준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 폐수처리오니를 해양투기 하고 있는 사업장(폐수1종사업장) " 에서 용출법이 아닌 함량법으로 분석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해양투기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 취해야 될 조치를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처리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방법을 소각, 매립, 재활용, 해양투기의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투기 방법이 제한을 받는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오수분뇨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 행정처분에 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40조에 의하면 등록을 한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때 등록취소라고 되어있는데요. 등록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수주해서 시공하고 준공후 공사수주를 못해 1년 이상 공사를 하지않을 때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휴업이라는 의미가 휴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주를 못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도 휴업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의 의미는 1년 이내에 영업 실적이 없거나 업체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휴업 신고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폐목재 사용 가능여부



건설현장입니다. 건설공사 수행 간에 발생하는 폐목재(기름, 페인트, 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순수한 각목 등의 목재)를 동절기에 현장 내에서 근로자 난방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단, 발생 소각재는 수거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매립위탁처리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이라도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폐목재를 소각재를 회수할 수 있는 난로 등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축산폐수재활용신고? 폐기물재활용신고?



본 사업장은 유기질 비료생산업으로 기존에 축산폐수를 이용하여 건조소석비사에서 퇴비화 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축산폐수 재활용신고를 득하였습니다.

금번에 재활용대상 폐기물 종류를 축산오니, 오니, 동식물

성 잔매물을 추가하여 재활용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축산폐수 재활용 변경신고인지?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종류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활용하고자 하는 물질의 분류에 따라 축산폐수재활용신고 및 폐기물재활용신고를 각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에 의한 1990년 이전 원필지 또는 개별필지로 보아 외지인이 규제규모 이하로 오수배출시설을 입지할 수 있는지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에 의한 도로편입에 따른 필지 분할'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할인 경우에는 도로 또는 선로 등의 설치에 따른 필지분할 시점별 건축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조의 4(설치신고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나오는 "열처리조합 시설"이란 것은 어떠한 구조나 기능을 가진 것인지요?



열처리시설은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및 고온용융시설 중 2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을 말합니다.

### 발전용 내연기관의 배출시설 여부



대기배출시설중 공통시설의 발전용 내연기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의1)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 비상용, 수송용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송용이란 어떤 것을 의미 하는 것인지요?

대단위 택지개발 현장의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인 150마력 분쇄시설을 이용하여 건설용 쇄석골재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분쇄시설이 이동식이라 대기배출시설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장 부지가 넓어 동력을 구할 수가 없어 분쇄시설의 동력원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발전기(300kW)를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의2) 이 발전기(발전용 내연기관)가 배출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가정 하에 시행규칙 별표9의 배출계수에 의해 오염물질 발생량을 구해보니 먼지와 황산화물은 배출허용기준치에 근접하는 데 질소산화물은 배출허용기준에 5배정도 배출됩니다. 산소농도를 고려하니 1.5배정도 나옵니다.

분쇄시설을 약 20일 정도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쇄석으로 분쇄하려고 하는데 발전기에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설치

### 특별대책지역1권역 내에서의 분할시점적용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1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분할시점 따라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토지대상 최초 등록 연월일이 1954년도인 개별필지이며 이후 1998년에 국토확포장공사에 따른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인해 토지분할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질의) 위의 경우 본인이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환경부고시

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의 드립니다.

질의의 수송용이란 의미가 이동식을 의미하는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공통시설중 발전용 내연기관(120kW 이상) 중 수송용은 기차, 선박 등에서 자체소비를 목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트레일러 등에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장소를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분쇄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기는 수송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 배출허용 기준



**Q** 배출허용기준을 보다보면 배출시설에 기타시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별로 해당되는 배출시설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명시되지 않는 시설에서 해당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기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의 경우(2005년 1월 1일 이후) 가. 화학제품제조시설과 나. 안료 및 염료제조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각각 50PPM과 70PPM을 적용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암모니아가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타시설로서 100PPM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여부(건조시설)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건조시설 및 사출성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스틱원료(PP, ABS) → 건조(수분 건조) → 사출성형 → 제품(플라스틱제품)

원료는 pellet(쌀알정도의 크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출성형시 수분이 있으면 불량률의 원인이 되므로 미량의 수분을 건조하기 위하여 건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조시설은 사출성형기 1대당 1기씩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조시설의 열원은 전기를 사용하여 열풍을 내부로 유입시켜 수분을 건조합니다. 비록 개별용량은 적지만 다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합계용량은 대기배출시설의 건조시설에 해당되는 용량입니다.

유사민원을 검색하였는데 '단순히 수분만 건조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조시설의 운영시 단지 수분만을 건조할 목적이지만, 대기 중에도 부유 먼지가 있듯이 미량이지만 먼지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조시설이 성형시설(사출)의 부대시설로 보아도 되는지 아니면 단독시설로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중 건조시설이란 함은 기타화학제품 등의 액체상 또는 고체상 조립자 등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하며, 건조공정에서 단순히 수분만 건조될 경우에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조공정이 아닌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먼지만이 배출되는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

[환경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코너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